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547
----------	-------

발의연월일 : 2026. 3. 17.

발 의 자 : 이기현 · 진성준 · 임오경
박해철 · 박지원 · 김남근
김교홍 · 고민정 · 장철민
정춘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술인권리침해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신고와 사실 조사, 구제조치 및 시정권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예술인권리침해의 경우 성희롱·성폭력행위와 달리 신고 주체가 예술인·예술단체 또는 예술인조합으로 한정되어 있어 피해당사가 직접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 사안이 은폐될 우려가 있음.

이에 예술인권리침해행위의 발생 사실을 인지한 사람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술인 권리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8조 제1항 및 제29조제7항 신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예술인·예술단체 또는 예술인조합은 예술인권리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을 “예술인권리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예술인·예술단체·예술인조합 또는 해당 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된 사람은”으로 한다.

제29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방법·절차, 조사절차의 종결 및 위원회 통지, 구제절차의 종결 및 위원회 보고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와 제30조,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의 신고) ① <u>예술인·예술단체 또는 예술인조합은 예술인권리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다.</u>	제28조(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의 신고) ① <u>예술인권리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예술인·예술단체·예술인조합 또는 해당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된 사람은-----</u>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9조(신고 사실의 조사) ① ~ ⑥ (생략)	제29조(신고 사실의 조사) ① ~ ⑥ (현행과 같음)
<u><신설></u>	⑦ <u>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예술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방법·절차, 조사절차의 종결 및 위원회 통지, 구제절차의 종결 및 위원회 보고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와 제30조,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u>